

우수공예품 지정서

지정번호			
신청업체명		대표자성명	
지정품목명			
공예분야			
용도			
규격(mm)			

「공예문화산업 진흥법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우수공예품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직인